

#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

## 심사보고서

|      |      |
|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| 2068 |
|------|------|

2024. 9. 5.  
문화체육관광위원회

### I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4년 8월 12일, 서울특별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4년 8월 14일

다. 상정결과 : 【서울특별시의회 제326회 임시회】

-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(2024. 9. 3.)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, 의결(원안가결)

### II. 제안설명의 요지(홍보기획관 마채숙)

#### 1. 제안이유

-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, 서울시, 성북구청,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을 체결함(2015. 12. 15.).
-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

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사업명 :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

나. 위치 : 성북구 길음로7길 20,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

다. 규모: 지상 1~3층(연면적 2,925.23㎡, 전용 1,791.1㎡)

라. 사업주체: 시청자미디어재단(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타공공기관)

마. 주요시설: 디지털교육실, 장애인방송제작실, 편집실, 사무실 등

바. 주요사업

- 미디어 교육 지원: 미디어체험 프로그램, 콘텐츠 제작 교육 등
-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: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
-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: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 지원 등

사. 출연금액(안): 292,100천원

-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총운영비(1,460,500천원)의 20% 분담  
(인건비 80,300천원, 경상비 211,800천원) ※ 사업비 제외

아. 출연의 필요성

- 서울시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의 운영비 지원 필요

### <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>

**제4조(운영비 분담)**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.

1.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%를 분담한다.
2.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%를 출연한다.

### Ⅲ. 검토보고 요지

#### 가. 동의안의 개요

- 시청자미디어재단은 「방송법」 제90조의2에 따라 시청자의 방송 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별도 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, 전국 12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음<sup>1)</sup>.

이 중 서울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「서울시청자 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을 체결하고, 서울시는 해당 협약에 따라 운영비의 20%를 출연하여야 함.

- 이에 서울시는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음.

#### 나. 출연의 개요

##### (1) 서울센터 설립·운영 현황

- 2015년 6월 개관한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는 서울 지역의 미디어교육, 장비대여, 시설대관, 제작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,

---

1) 시청자미디어재단은 「방송법」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으로서 현재 부산, 광주, 강원, 대전, 인천, 서울, 울산, 경기, 충북, 세종, 경남, 대구 등 12개 지역센터를 운영 중이며, 운영비는 각 협약상 부담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하고 있음.

시민들의 미디어 복지 향상과 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을 체결하여 2017년부터 출연금을 분담하고 있음.

-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은 2015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, 시청자미디어재단, 서울시, 성북구 등 4자 간에 체결된 협약으로서, 협력분야, 설립공간, 운영비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.
- 최초 협약에 따라 서울센터는 당시 신축 예정이었던 길음동 복합문화시설(現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) 내에 입주하기로 하고, 성북구 관내 노블레스 빌딩에서 임시 운영되어 왔음.
- 이후 2018년 하반기 중 완공 예정이었던 길음동 복합문화 시설의 공사가 지연되면서 2020년 하반기까지 임시운영하도록 개정된 협약이 체결되었으며(2018. 8.),

2020년 8월 센터 이전 후 11월, 임시운영 조항이 삭제된 협약이 다시 체결되었음.

- 현재 서울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원은 11명(정원 12명)으로, 서울 성북 미디어 문화마루 지상 1~3층(연면적 2,925.23㎡)을 사용하고 있으며, 2024년도 예산은 18억원임<sup>2)</sup>.

---

2) 2024년도 예산(1,800,330천원) = 운영비(1,460,500천원) + 사업비(339,830천원)

## (2) 출연의 규모

- 출연은 협약에 따라 사업비를 제외한 운영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, 2025년도 출연의 규모는 기준액인 올해 운영비 14억 6천1백만원 중 서울시 부담률인 20%를 적용한 2억 9천2백만원으로, 전년 대비 2백만원(△0.7%) 감액되었음.

### <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>(2020. 11.)

**제4조(운영비 부담)**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.

1.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%를 부담한다.
2.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%를 출연한다.

- 운영비는 2020년 센터가 서울성북 미디어문화마루로 이전하면서 노블레스 빌딩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이전 대비 전용면적, 시설, 인력 등이 확대되면서 운영비가 크게 증가하였고, 이후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.

### <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현황 >

(단위 : 천원)

| 연 도    | 2020년도            | 2021년도             | 2022년도            | 2023년도           | 2024년도            | 2025년도(안)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운영비    | 843,500           | 1,452,300          | 1,428,300         | 1,479,700        | 1,460,500         | 1,460,500         |
| 서울시출연금 | 159,388           | 286,689            | 285,660           | 295,940          | 294,020           | 292,100           |
| 출연금증감액 | 71,650<br>(81.7%) | 127,301<br>(79.9%) | △1,029<br>(△0.4%) | 10,280<br>(3.6%) | △1,920<br>(△0.6%) | △1,920<br>(△0.7%) |

## 다. 출연의 타당성

-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는 서울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

미디어를 바로 알고 방송, 영상, 인터넷 등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공공미디어 기반시설로,

‘지난 5개년 간 서울센터 이용자 현황’을 살펴보면, 총 이용자 수는 2019년도 49,396명에서 2023년도 135,488명으로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어 전체 수익자가 확대되었다는 측면에서 출연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.

**< 지난 5개년 간 서울센터 이용자 현황 >**

| 구 분               | 2019년도     | 2020년도     | 2021년도     | 2022년도   | 2023년도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총 이용자 수           | 49,396명    | 87,786명    | 110,418명   | 127,658명 | 135,488명 |
| 학교미디어교육 이용자 수     | 12,385명    | 57,758명    | 29,727명    | 26,283명  | 46,491명  |
| 사회미디어교육 이용자 수     | 11,538명    | 10,864명    | 17,652명    | 21,892명  | 12,876명  |
| 미디어체험 연인원         | 2,065명     | 5,443명     | 3,539명     | 4,785명   | 5,877명   |
| 서울지역 미디어교육지원 학교 수 | 34개        | 29개        | 34개        | 24개      | 24개      |
|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건 수*    | 10개/3,448분 | 15개/3,907분 | 10개/4,383분 | 436건     | 518건     |

\* 2021년도 이전에는 ‘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방송사/분량’으로 실적을 집계함

- 다만, 세부항목 중 사회미디어교육 이용자 수와 미디어교육지원 학교 수가 정체된 점을 고려하면,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강화와 미디어 소외계층 증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역할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.
- 또한,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지난 3년 간 종합만족도 점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주요 항목별 만족도에서 ‘장비’ 분야는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장비의 개선을 위한 사업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.

**< 지난 3개년 간 서울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>**

| 연도 \ 서울센터 | 종합만족도 | 주요 항목별 만족도 |      |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          |       | 미디어교육      | 강사   | 시설   | 장비   |
| 2021년     | 87.4  | 87.9       | 88.6 | 91.8 | 84.7 |
| 2022년     | 88.3  | 90.4       | 91.5 | 93.9 | 83.7 |
| 2023년     | 89.3  | 89.9       | 91.4 | 93.8 | 83.0 |

- 협약 제6조에 따르면 센터는 운영에 대한 지역 참여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발전협의회를 두고, 센터의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, 서울시는 그 구성에 관여할 수 있음.
- 그러나 매년 3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연도별 사업 결과 및 계획 보고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서울센터의 사업비는 오히려 하락세인 것을 고려하면, 협의회는 서울센터의 운영에 실효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.

**< 2021 ~ 2024년도 서울센터 사업비 현황 >**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 | 2021년도  | 2022년도  | 2023년도  | 2024년도  |
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사업비 | 373,100 | 376,490 | 364,455 | 339,830 |

- 따라서 서울시는 발전협의회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과 더불어 기타 행사 가능한 권한을 모색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미디어 이용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겠음.

##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

방송통신위원회, 서울특별시, 성북구,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하여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**제1조(목적)** 본 협약은 방송통신위원회, 서울특별시, 성북구, 시청자미디어재단(이하 '재단'이라 한다)이 협력하여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를 설립·운영함으로써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협력분야)** 방송통신위원회, 서울특별시, 성북구, 재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 필요한 경우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1. 방송통신위원회는 센터 설립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을 구축하고 미디어에 관한 교육,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지원 등 방송법 제90조의2 제4항에 규정된 사업을 하는 센터를 운영한다.
2.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센터 설립에 필요한 적정공간을 제공하고, 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해 협조·지원한다.
3. 재단은 센터가 서울 전역의 시청자미디어지원 관련 사업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도록 협력한다.

**제3조(설립공간)** 센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1286-8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내에 설립한다.



**제4조(운영비 부담)**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.

1.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%를 부담한다.
  2.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%를 출연한다.
- ② 운영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상호 사전 협의한다.

**제5조(관리 및 운영)** 방송통신위원회는 센터 관리·운영을 재단에 위탁하며,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재단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.

**제6조(발전협의회 구성)** ① 센터 운영에 대한 지역 참여와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센터 발전협의회를 둔다.

- ② 발전협의회는 관계 행정기관, 교육기관, 미디어 관련 학계·단체·업계 인사 등으로 구성하며, 방송통신위원회, 서울특별시, 성북구의 추천 및 의견을 반영한다.
- ③ 발전협의회는 센터의 사업·정책·예산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며, 운영에 관하여는 재단의 정관 등 내부규정에 따른다.

**제7조(분쟁해결)** 본 협약에 대한 해석상의 이의나 분쟁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,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소송의 관할은 센터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8조(협약서의 효력)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발생하며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.

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를 4부 작성하여 당사자 별로 아래에 직인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11월 30일



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


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 
행정1부시장



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



성북구청장



#### IV. 질의 및 답변요지

- 질의: 시청자미디어센터의 소재지 외 지역에서 거주 중인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 역차별적 요소가 발생하지는 않는지?

답변: 2023년도 기준 서울 센터 이용자 13.5만 명 중 서울 지역 거주자가 12만 명이었으며, 이 중 소재지인 성북구 주민이 35%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, 지역 편차가 크지 않다고 판단됨.

- 질의: 사업의 내용, 프로그램의 구성은 어떻게 결정되는지?

답변: 기본적으로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결정을 하지만, 별도로 운영 되는 발전협의회를 통하여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음.

#### V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(재적위원 10명, 참석위원 9명, 참석위원 전원찬성)

#### 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#### 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#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출연 동의안

|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<br>번호 | 2068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년월일 : 2024년 8월 12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## 1. 제안이유

- 가. 시청자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, 서울시, 성북구청, 시청자미디어재단 간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을 체결함('15. 12. 15.)
- 나. 업무 협약에 따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얻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명: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
- 나. 위치: 성북구 길음로7길 20,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
- 다. 규모: 지상 1~3층(연면적 2,925.23㎡, 전용 1,791.1㎡)
- 라. 사업주체: 시청자미디어재단(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타공공기관)
- 마. 주요시설: 디지털교육실, 장애인방송제작실, 편집실, 사무실 등
- 바. 주요사업

- 미디어 교육 지원: 미디어체험 프로그램, 콘텐츠 제작 교육 등
- 시청자 방송참여 지원: 방송제작을 위한 시설장비 무료대여 등
- 소외계층 방송교육 지원: 장애인 방송 서비스 제작 지원 등

사. 출연금액(안): 292,100천원

-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 총운영비(1,460,500천원)의 20% 분담 (인건비 80,300천원, 경상비 211,800천원) ※ 사업비 제외

아. 출연의 필요성

- 서울시민의 미디어 접근권을 제고하고 권익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 하기 위해 「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」에 따라 시청자미디어재단 서울센터의 운영비 지원 필요

<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설립·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>

제4조(운영비 분담) 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운영비는 센터 구축에 필요한 신규 시설장비와 관련된 비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담한다.

1. 방송통신위원회는 운영비의 60%를 분담한다.
2.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는 각각 운영비의 20%를 출연한다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방송법」 제90조의2

제90조의2(시청자미디어재단)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.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: 2025 회계연도 예산편성

다.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: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안주희(☎2133-6442)